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410호 2018. 12. 31(월)

차 례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7호 가좌라이프빌라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3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8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 5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7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고시 ----- 6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180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
도면 고시 ----- 8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20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 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92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 12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7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4항, 제24조 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변경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중봉대로 350 외 8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도 열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8.12.31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고시일 : 2018-12-31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82-121	인천광역시 서구 중봉대로 350 (원창동)	20090706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으로 금산 싸움에서 7백 의병과 함께 전사한 조현선생의 호를 따서 제명	
2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486-1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727 (불로동)	20090710	검데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9-112	인천광역시 서구 청동로 120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동쪽에 위치	
4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8-31	인천광역시 서구 청서로 19 (청라동)	20101111	청라대로 서쪽에 위치	
5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350-281	인천광역시 서구 호두산로 26 (경서동)	20090922	도로진행방향에 호두산이 위치하고 있어 호두산로라 명명함	
6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53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113-19 (대곡동)	20130730	법정동 명칭 반영	
7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533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로 114-9 (대곡동)	20130730	법정동 명칭 반영	
8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167-3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76번길 21 (청라동)	20120330	청라에메랄드로의 시작점에서 7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9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56-24	인천광역시 서구 장고개로243번길 29 (가좌동)	20170703	장고개로 시작지점에서 약2,430m지점 왼쪽으로 분기되는도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77호

가좌라이프빌라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인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가좌라이프빌라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관리처분계획의 공람 및 인가절차 등)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좌라이프빌라 재건축사업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44번지 일원
 - 나. 면적 : 53,855.0㎡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법인의 명칭 : 가좌라이프빌라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인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 26
 - 다.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 조합장 박보현(인천 서구 열우물로240번길)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8. 12. 27.
5.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대지면적(㎡)	35,564	건축물 용도	공동주택(아파트)
건축면적(㎡)	5,835.43	건폐율(%)	16.41
연 면 적(㎡)	166,089.51	용적률(%)	298.91
규 모	지하3층/지상 26~29층 (공동주택 10개동 외)	세 대 수	1,218

나.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공동주택	구분	세대수 (아파트)	주택규모별 세대수(전용면적 기준)					
			49.41㎡	59.91㎡	59.96㎡	69.99㎡	84.98㎡	84.86㎡
	계	1,218	273	200	252	215	164	114
	분양	1,178	233	200	252	214	163	113
	임대	40	40	-	-	-	-	-
	보류지	3				1	1	1

다. 신설 또는 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정비기반시설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종류	규모	종류	규모	시행자	비용부담자 및 부담내용
	도로	6,235.2㎡	도로	7,276.8㎡	가좌라이프 빌라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 무상귀속
	공원	3,000.5㎡	공원	8,165.2㎡		
			녹지	1,126.0㎡		
			노외주차장	423.0㎡		
			노유자시설	1,300.0㎡		

라.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등

- 1) 이주 : 2019. 3. ~ 2019. 6.
- 2) 철거 : 2019. 7. ~ 2019. 11.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78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시행령 제38조(하천점용허가의 고시)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12.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대곡천(지방하천)
 - 가. 허가 번호: 제2018 - 05호
 - 나. 허가년월일: 2018. 12. 27.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황** 외 1명
 - 나.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라임로 **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오배수관 매설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위 치: 인천 서구 대곡동 100-11번지 외 2필지
 - 나. 면 적: 17m²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8. 12. 27. ~ 2022. 6. 30.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7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30(2018.9.17.)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인천 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사업명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도로·주차장 조성사업】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 인가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8. 12.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49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 명칭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도로·주차장 조성사업
3. 사업의 규모

() 확폭 구간

노 선 명	폭 원 (m)	연 장 (m)	면 적 (㎡)
중로 3-325	12	70	416.8
소로 2-52	8~12(4)	167(50)	189.7
소로 3-34	6~10(4)	363(122)	485.9
시 설 명	면 적 (㎡)		주차면수
주차장	368		15면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롯데우람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조천희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2번길 19, 원광빌딩 3층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20. 6.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지 번	지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지적	편입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91-3	대	1,760.0	80.9	롯데우람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 122번길 19 원광빌딩 3층			
491-4	대	1,013.6	452.3(319)					
491-5	대	89.3	89.3(49)					
492	대	695.4	251.4					
492-1	대	5,197.7	355.1					
493	대	5,416.0	195.0					
633	도	6,051.6	36.4	인천시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시설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중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도로	중로	3	325	12	국지도로	70	소로2-52	롯데우람 정비구역	일반도로		2012.6.11.	
도로	소로	2	52	8 (8~12) [4]	국지도로	167 [50]	소로2-447	중로1-57	일반도로		2012.6.11.	
도로	소로	3	34	6 (6~10) [4]	국지도로	363 [122]	중로2-38	대로1-11	일반도로		2012.6.11.	

※ [] 구역 내에 관한 사항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신설	주차장	서구 석남동 491-5번지 일원	368	2012.6.11.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18-180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녹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녹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 12.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변경)취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2. 위 치 : 서구 원창동 213-21번지 일원
3. 면적 또는 규모

○ 시설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	-	녹지	경관녹지	서구 원창동 213-21번지 일원	1,384	증) 206	1,590	2016.11.0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263)	

○ 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증가 - 1,384m² → 1,590m² 증) 206m²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도로접합 부분까지 녹지연장) 이행 및 도시계획시설 토지분할 측량결과에 따른 면적 오차정정을 통하여 녹지의 유지관리 및 도시경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4. 지형도면 : 게재생략(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http://luris.mltm.go.kr/>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18-1920호

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인천식품단지개발(주)에서 시행하는 『I-Food Park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18.11.28. 토지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하고,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 및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재결서 정본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2018. 12.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다 음 -

1. 사 업 명 : I-Food Park 조성사업
2. 사 업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457번지 일원
3. 사업 시행자 : 인천식품단지개발(주)
4. 서류의 종류 및 명칭 : 수용재결서 정본(사본)
5. 재결서 정본 수령장소 : 인천식품단지개발(주) 사무실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108번길 17-2 (오류동)
☎032-561-1186]

6. 공시송달 대상 : 첨부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기재와 같음

7. 공시송달 사유 : 주소 및 거소 불분명 등

8. 공시송달 공고기간 : 2018. 12. 31. ~ 2019. 1. 14. (14일간)

9. 기타

가. 손실보상재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없이 같은 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 수령시 청구서 등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고 기재하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이의를 유보하지 않고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다루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없음)

I-Food park 조성사업 공시송달대상자

(단위:원)

일련 번호	수용(사용)할 물건의 표시						재결액(안) 보상금	소유자		관계인		비고
	동(리)명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현주소	성명	주소	
			공부	실제	공부	편입						
1	금곡동	451-7	답	답	109.00	109.00	20,764,500	노*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화동 60-**			
2	금곡동	456-2	답	답	191.00	191.00	65,131,000	송*환	경성부 도림동 9* (현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림동 9*)			
3	금곡동	456-34	답	답	21.00	21.00	6,951,000	송*환	경성부 도림동 9* (현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림동 9*)			
4	금곡동	456-35	답	답	88.00	88.00	16,544,000	송*환	경성부 도림동 9* (현재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림동 9*)			

인천광역시 서구 제2018-1922호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차량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1항 위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소유자의 운행정지 요청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22조(운행정지명령대상 자동차의 확인)에 의거 운행정지명령대상 차량으로 확인되었기에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2. 31.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공 고 기 간 : 2018. 12. 31. ~ 2019. 1. 14.(15일간)

2. 공 고 내 용

1. 행정처분 제목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대상차량	등록번호	67라7074외 10건(붙임 참조)		
	차 명			
3. 운행정지사유	소유자의 요청 등			
4. 법적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5. 관할관청	기관명	인천광역시 서구청	담당부서	교통민원과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299(심곡동) (☎ 032-560-4877, FAX 032-560-2793)		

3. 유 의 사 항

- 1)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2)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3) 운행정지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말소 등록된 자동차(무등록 자동차)를 운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구청 교통민원과 차량관리팀(☎ 032-560-487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운행정지 명령 대상 자동차

연번	자동차등록번호	소유자	운행정지명령 등록일	비고
1	67라7074	최동*	2018.12.24	
2	70조4357	성주*	2018.12.06	
3	36부7486	이만*	2018.12.06	
4	39머1381	성주*	2018.12.06	
5	16마7753	김동*	2018.12.04	
6	25다5303	김동*	2018.12.03	
7	경기67나1409	박상*	2018.12.03	
8	52너9162	김두*	2018.12.03	운행정지 해제 (2018.12.05.)
9	46구9945	조현*	2018.11.30	
10	28도2248	장*	2018.11.30	